

## FSS/2206-12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 2016.1.1.~ 2018.9.30.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일반 교과학원 업체로, ’16년부터 퇴직급여 충당부채 과소계상을 시도하였다. 회사는 사업자인 강사에 대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해오지 않다가, 비록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강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15.6.11.) 이후 강사에 대하여 관련 부채를 계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회계팀장은 재무담당임원의 지시에 따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16년~’17년까지 강사들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보험수리적 기법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급여가 아닌, 과거 회계기준인 퇴직금 추계액을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과소계상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방법인 보험수리적 기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출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16년 및 ’17년에 과거 기준인 퇴직금 추계액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산출하였으며, 산출 과정에 1년 미만 재직 강사를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특히 ’17년에는 과거기준인 퇴직금 추계액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에 80%의 설정률을 적용하여 계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과소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 문단 66.에 따르면, 확정급여 제도의 궁극적인 원가는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된 당기근무원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1)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 (2)퇴직급여액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배분, (3)보험수리적 가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기 위하여 퇴직금 추계액 산출방식을 사용한 것은 회계기준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7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 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산출할 때,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이 아닌, 퇴직금 추계액 방식을 사용하였고, 전년도와 달리 재직 1년 미만의 강사를 제외하여 퇴직금 추계액을 산출하였고('16년), 퇴직금 추계액 산출액의 80%만을 계상('17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보험수리적 기법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급여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보는 등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강사의 평균 근속연수가 약 3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계상액과 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산출된 금액의 차이가 중요성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하였다.

#### **5. 시사점**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중요성 관점에 따라 형성되므로,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에 미달할 경우 감사의견을 변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상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을 감사인이 명백하게 인지한 상황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재계산을 통해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적합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생략하여서는 안된다.